

【2025학년도 제19차】

규정심의위원회

“ 나 를 나 답 게 ”



제19차 규정심의위원회 안건

- 일 시: 2025. 10. 2.(목), 09:30~
- 장 소: 기획팀 회의실(문화관 204호)
- 심의 안건

연번	안건	입안부서	배석	예상시간
1	심의	「AI혁신추진위원회 규정」 제정 건	기획팀	기획처장
				'30

○ 추후 일정

규정관련 심의기구(순)	비고
교무위원회	-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
대학평의위원회	- 학칙 해당
법인이사회	- 직제, 인사, 보수에 관한 규정 해당
제20차 개최	- 2025.10.23.(목) 14:20~

- 학칙 및 직제규정: 입안예고공청회 3일 이상 의견조회 시행

규 정 입 안 서

규정명	「AI혁신추진위원회 규정」		
입안형태	■ 제 정		□ 개 정 □ 폐 지
소관부서	기획팀	관련 부서	대학 전체
부서 간 협의 결과	• 2025. 7. 29. 우석대학교 AI 혁신 추진위원회 (TF) 신설 • 2025. 8. 12. 우석대학교 AI 혁신 추진위원회 출범 • 2025. 9. 17. 제6차 AI 혁신 추진위원회 대학 내 위원회로 전환 의결		
법인이사회	• 해당 사항 없음		
대학평의위원회	• 해당 사항 없음		
입안 사유 (추진 배경)	•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학의 교육, 연구, 행정 전반의 혁신이 요구됨. • 대학의 AI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, 이를 지역·산업·사회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• 대학의 AI 기반 혁신역량을 총괄·조정·실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구성 • AI 활용 교육혁신, 연구개발, 산학협력, 지역사회 기여 전략을 수립·실행하여 대학 차원의 종합 전략 로드맵 수립 및 단계적 추진계획 마련하고자 함		
관련 근거 (관계 법령)	•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(설치) • AI혁신추진위원회 설치 교무위원회 의결 (2025. 9. 24.)		
주요 내용 (제·개정 내용)	• 규정의 주요 구성 - 위원회의 목적, 기능, 구성, 위원의 자격과 임기, 회의 및 의결 절차, 회의록 작성, 보고, 소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화 • 위원의 구성 - 대외협력부총장, 진천부총장, 산학협력부총장, 대학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취업처장, 입학처장, 사무처장, 산학협력단장, 교육혁신본부장, 교양대학장, 교학처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역량개발인증센터장, 정보통신센터장, IR센터장 등 20인 내외로 구성 • 위원회의 기능: - AI 기반 대학 혁신 전략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- AI 기반 교육과정 개편 및 학사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(자문) - AI 기반 학생지원·성과관리·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- AI 혁신 관련 산학연계 및 대외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-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		
기대효과	• AI 혁신역량을 총괄·체계적으로 관리·확산 • 지역·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• 대학-산업-지역사회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• 정부 재정지원사업 및 지역혁신사업 유치 경쟁력 강화		
구성원 참여·소통을 위한 의견 수렴 (공청회, 설명회, 의견조치 등)	가. 의견수렴 유무	해당사항 없음	
	나. 공청회 및 공고기간(포털 및 홈페이지)		
	다. 의견제출 유무		
	라. 의견수렴 반영사항		
첨부자료	• 「AI혁신추진위원회 규정」(안) 1부		

AI혁신추진위원회 규정(안)

[제정 2025. . .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의 AI 기반의 대학혁신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AI 혁신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자문에 한한다.

1. AI 기반 대학 혁신 전략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AI 기반 교육과정 개편 및 학사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
3. AI 기반 학생지원·성과관리·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
4. AI 혁신 관련 산학연계 및 대외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
5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대외협력부총장, 진천부총장, 산학협력부총장, 대학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취업처장, 입학처장, 사무처장, 산학협력단장, 교육혁신본부장, 교양대학장, 교학처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역량개발인증센터장, 정보통신센터장, IR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③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,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)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소위원회)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소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간사)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기획처 기획팀장으로 하되, 필요시 AI혁신 관련 전담부서 직원이 공동 간사로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그 회의록에는 의장과 출석 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협조 요구 및 이행 의무) 위원회 업무 추진을 위해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관계 부서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 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경비지원 및 보상) 총장은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보상할 수 있다.

제13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